

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(봉양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32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4월 02일
발 의 자 : 봉양순 의원(1명)
찬 성 자 : 강대호, 김기덕, 김정환,
송명화, 송정빈, 신정호,
오현정, 유정희, 이광성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학교,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국공립 유치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않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일괄적으로 위임관리를 함에 따라 해당 음수대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.

2. 주요내용

- 가. 음수대 위탁관리 전면 시행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철회 및 제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, 음수대 무단철거 또는 정수기 사용 등에 따른 제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- 나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 중”을 “시장은”으로, “범위 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 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관리를 받는 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음수대 설치(연차별 계획에 따른 교체 포함)를 보류하거나 냉온 및 수압기능을 위한 장치 이상 등 중대한 고장 발생에 따른 교체,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경우
2. 음수대를 무단 철거하는 경우
3. 정수기를 설치하는 경우

부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관리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설치된 음수대 중에서 냉온 기능, 수압 기능을 위한 장치 이상 등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음수대로서의 기능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은 교체,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.</p> <p><신 설></p> <p>③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음수대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따른 교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1항에 따른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,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」(이하 “수도조례”라 한다)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</p>	<p>제9조(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 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----- ----- 범위에서 -----.</p> <p>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관리를 받는 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음수대 설치(연차별 계획에 따른 교체 포함)를 보류하거나 냉온 및 수압기능을 위한 장치</p>

면을 철회할 수 있다.

⑤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이상 등 중대한 고장 발생에 따른 교체,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경우
2. 음수대를 무단 철거하는 경우
3. 정수기를 설치하는 경우

<삭 제>